# 「경기도동부권협의회」 폐지 결정 보고

의 안 번 호 **2754** 

제출연월일 : 2023. 8. .

제 출 자:하남시장

#### 1. 협의회 개요

○ 설립일자 : 1995. 10. 18.

○ 회원 자치단체 : 경기도 동부권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※ 용인시, 성남시, 남양주시, 광주시, 하남시, 이천시, 구리시, 양평군, 여주시, 가평군

- 현 회장 : 양평군수

- 부담금 : 연 120만원 ※ 부담금 잔액 : 48,655,998원(2023. 7. 기준)

○ 주요기능 : 동부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된 사무를 공동 처리하여 균형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성 추구

### 2. 폐지사유

- 코로나19로 인한 협의회 운영의 중단 등 행정환경 변화
-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, 폐지 의견이 다수임에 따라 임시회의(2023.7.4.)를 개최하여 폐지 결정

### 3. 행정사항

- 2023. 9. 행정협의회 폐지 고시
- 2023. 9. 관련 내용 통보 (하남시 → 양평군)
- 2023. 9. 부담금 잔액 균등 반환 요청 (하남시 → 협의회)부담금 잔액 균등 반환 (협의회 → 하남시)

## 관련 법령 및 협의회 구성현황

## 1 지방자치법

제169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75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<u>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</u> 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